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2025.4.

서울한영대학교
SEOUL HANYOUNG UNIVERSITY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No	계열	모집단위	입학정원	2025학년도 이월인원	합계
1	인문사회계열	신학과	15	1	16
2	인문사회계열	상담심리학과	45		45
3	인문사회계열	아동보육학과	40		40
4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학과	45		45
5	인문사회계열	재활복지학과	35		35
합계인원			180		181

가. 수시모집

전형 유형	모 집 학 과	수시 모집 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 전형	만학도 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학생부 교과	신학과	13	11	1	1	3	5	18
	상담심리학과	36	36		-			
	아동보육학과	32	32		-			
	사회복지학과	36	36		-			
	재활복지학과	28	28		-			
계		**145**	**143**	**1**	**1**	**3**	**5**	**18**

나. 정시모집

전형유형	모 집 학 과	정시 모집 인원	나군		
			일반전형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
수능 위주	신학과	3	3	0 (수시 미충원시 이월선발)	0 (수시미충원시 이월선발)
	상담심리학과	9	9		
	아동보육학과	8	8		
	사회복지학과	9	9		
	재활복지학과	7	7		
계		**36**	**36**		

다. 전형기간자율

전형유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3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9월)
기타	신학과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인원 제한없음	모집인원 제한없음
	상담심리학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			
	국제학부(외국인 전담학과)			
계				

▢ 전형별 지원자격

전형명	지원자격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만학도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만 30세 이상인자(입학일자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 휴유의증환자, 지원대상 자,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포함) 2) 세부자격: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발급 대상자 3) 참전유공자 및 손자녀(독립유공자 제외)는 교육지원대상이 아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정원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촌(읍,면)소재 초·중·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자로서 해당 기간의 재학기간 동안 읍·면 지역에 거주한자 ② 농어촌(읍·면) 소재 중·고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입학에서 졸업까지 모두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부모와 본인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소재지'란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의미함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제외

전형명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전형 (정원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등 대상자 전형 (정원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인정된 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 4)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외국인전형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로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가. 수시

전형 유형	전형명	정원 내외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선발 방법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실기	면접	기타
학생부 (교과)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정원내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	일괄합산	100	100	-	-	-
	장애인등 대상자	정원외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	일괄합산	100	**60**	**-**	**40**	-

나. 정시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선발 방법	선발 비율	전형요소 반영비율			
					학생부	실기	면접	수능
수능 위주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	일괄합산	100	40	-	-	60

※ 정시(정원외): 수시 미충원인원에 한해 선발

▢ 학년별 및 요소별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명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100%)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수시	학생부 교과	20	30	50	80	20(출결)
정시(나)	수능위주	20	30	50	80	20(출결)

▢ 학생부 반영교과

모집 시기	전형명	반영교과	반영방법
수시	학생부 교과	전학년 -국어 {공통 과목(국어),일반 선택(독서,문학,언어와 매체,화법과 작문)}, -수학 {공통 과목(수학),일반 선택(미적분,수학Ⅰ,수학Ⅱ,확률과 통계)}, -영어 {공통 과목(영어),일반 선택(영어 독해와 작문,영어 회화,영어Ⅰ,영어Ⅱ)}, -사회(역사/도덕포함) {공통 과목(통합사회),일반 선택(경제,동아시아사,사회·문화,생활과 윤리,세계사,세계지리,윤리와 사상,정치와 법,한국지리)}, -과학 {공통 과목(과학탐구실험,통합과학),일반 선택(물리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화학Ⅰ)}, -한국사 {공통과목(한국사)}	교과점수 = (1학년성적+2학년성적+3학년성적) 1학년 성적 점수 {Σ(등급점수×이수단위) ÷ Σ이수단위}×0.2 2학년 성적 점수 {Σ(등급점수×이수단위) ÷ Σ이수단위}×0.3 3학년 성적 점수 {Σ(등급점수×이수단위) ÷ Σ이수단위}×0.5
정시(다)	수능위주		

▢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 평가방법

전형대상	반영방법
2007년 이전졸업자	-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석차등급을 적용 - 학생부 제출자 중 과목별 석차가 없는 경우 계열석차를 적용
검정고시	- 검정 고시자는 성적표에 표시된 과목평균을 적용
외국고등학교 졸업자	- 이수학기(학년) 전체 평균점수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 학생부 최저 점수 반영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 학생부있는자의 반영방법과 동일하되, 1~2학년 성적만 반영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 학생부있는자의 반영방법과 동일하되, 1~2학년 성적만 반영
기타	- 학생부 최저점수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반 영 영 역	반영비율(%)	점수활용지표
국어	30	백분위
영어	30	등급
탐구영역 (사회, 과학, 직업 중 성적순으로 1과목 반영)	20	백분위
한국사	20	등급

※ 영어영역, 한국사영역 백분위환산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점수	100	88	76	64	52	40	28	16	0

▢ 면접고사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학과	반영 비율	면접기준
수시	학생부 (교과) 위주	장애인등대상자전형	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재활복지학과	40	1. 학생으로서의 수학능력을 반영함 2. 면접점수는 전형별 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반영함 3. 면접 취득점수가 40%미만일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4. 면접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학교폭력조치사항반영방법

전형대상	반영유형	반영방법
모든전형	정량평가	학생부 평가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호수에 따라 총점에서 최고 50점~최저 5점까지 감점처리함.